

RESEARCH ARTICLE

Legal review of author's judg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Ji Ung Kim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Converg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i Ung Kim (kim77@jnu.ac.kr)

ABSTRACT

Along with the generative AI ChatGPT craze, various legal issues are emerging as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on technology based on AI general-purpose technology develops rapidly throughout the economy and society. In particular, it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will be recognized as human-created works and to whom the copyright of the creation will be attributed. Sinc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performs relatively simple tasks and mainly follows programmed rules or predefined patterns, developers or owners can claim copyright on the results generated throug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ut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actively learn, own, and judg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review the overall legislation of AI and copyright, and review the author's judgment of AI products and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overseas legislative trends of AI copyright.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uthors, copyrights,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Open Access

Citation: Kim JU. 2025. Legal review of author's judg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 Research 13(1):1-16.

DOI: <https://doi.org/10.12972/kosiper.2025.13.1>

Received: April 24, 2024

Revised: December 26, 2024

Accepted: June 19, 2025

Published: June 19, 2025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 Research

Funding: The author received no financial support for this article.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빠른 혁신과 새로운 융합이 결합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기술이 절대적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공지능(AI)은 그 적용 분야에 따라 정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개념은 대규모 데이터(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능 및 학습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를 자동화하거나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AI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이상 쓸모없는 정의가 될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강화 학습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AI 기술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중대한 이슈로 여겨지며 지식재산권은 창작물이나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개념으로, AI 기술은 대부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이 생성하거나 활용하는 지식과 결과물은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속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은 지식재산권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AI가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생성한 경우, 이러한 작품의 소유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저작자의 판단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법제 검토와 해외 입법 동향 및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세부 개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법제 검토

2.1. 인공지능의 개념 및 분류

현대의 인공지능(AI)은 학습, 추론, 예측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지적 노동을 모방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로 정의된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65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교한 알고리즘,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저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한편, 1950년대의 초기 인공지능 연구는 문제 해결 기법과 기호처리(symbolic processing)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인공지능 발전의 기초를 형성한 바 있다[1].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국방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추론 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1970년에는 미국 국방 고등 연구계획국(DARPA)이 도로 지도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은 그 작동 방식, 과학적 추구 유형, 기술 발전 수준, 인간의 인지 능력 수준 등의 요소에 따라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2]. 약한 인공지능(Weak AI)은 특정한 과업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이나 규칙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율적 사고나 자의식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이나 작업을 보조하는 기술적 도구로서 기능한다.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지 능력, 정서적 반응, 자율적 판단력 및 자아 인식을 갖춘 고도화된 지능체로 이해되며, 이러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3].

반면, 약한 인공지능(Weak AI)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설계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인간의 일부 사고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적 도구로서의 역할에 머무른다. 자의식이나

감정은 결여되어 있으며,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한정된 규칙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창의적 판단과 감성적 반응을 할 수 있고,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3].

또한 초지능형 AI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초인간적 존재로서 새로운 과학 분야를 창출하고 경제 시스템을 리뉴얼하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전문가들은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장 닉 보스트롬이 2056년 AI 100주년까지 강력한 AI가 달성될 가능성을 긍정적(56%)으로 전망하면서 2040년 50% 수준에서 시작해 2075년 90% 수준에 도달한 후 향후 30년 안에 초지능형 AI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75%)을 제시했다.

2.2. 저작권법상 저작자 판단

저작권 제도의 탄생 배경에는 대량 복제 시대를 연 인쇄술의 발명이 자리 잡고 있다. 15세기 독일의 인쇄업자 요한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자 출판업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특권을 주장하였으며, 1710년 영국에서 앤 여왕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출판물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다.

영국의 여왕 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법은 영국 왕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법이었고,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저작권법이었다. 1709년부터 1710년까지 제정되어 1710년 4월 10일 발효되었다. 앤여왕법은 발효와 함께 14년 동안 도서 출판업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부여했으며, 이미 인쇄된 모든 책에도 21년간의 보호권을 부여했다[4]. 이를 시작으로 프랑스는 1777년에 그리고 미국은 1790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법 제정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나 그 내용은 국가마다 기준이 달랐다. 따라서 얼마 후 국제적 관리 차원에서 저작물 보호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었고 1886년 9월 9일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의 기틀이 된 베른협약이 최초로 만들어졌다[5].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강화해 왔으며, 1952년 세계 저작권협약, 1961년 공연자, 녹음기 제작자, 방송단체 등을 위한 로마협약, 1995년 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측면 협약 등이 연이어 제정되어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결과물로 정의되며, 이러한 창작 행위를 수행한 자를 일반적으로 '저작자'라고 본다.

따라서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저작자 개인의 창작물적 특성이나 개성이 반영된 무체물에 대한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개념은 대륙법 체계 국가와 영미법 체계의 국가에서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6]. 대륙법체계에서는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내재적으로 부여하는 자연권적 권리로 인식하고 전통적으로 정신적 창작을 한 자연인만을 창작자로 인정하여 왔고 영미법계에서는 계약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물을 통해 공중에 기여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부여되는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법계에서는 생성물을 창작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창작을 기획한 제작자도 저작자로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저작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고 있다[7].

2.3.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성립요건

저작물은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학술, 예술 등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창작 결과물로 간주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법조항에 의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것을 요구하는 창작성이 반드시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자신의 독특한 생각이나 감정의 독특한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구나 제작할 수 있었던 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결여된 저작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다양한 도형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물로서 표현되는 예술적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동반하는 기능적 저작물을 의미한다.

기능적 저작물은 그 기능이나 실제적 사상이 속하는 분야의 일반적인 방법이나 기준은 물론, 저작물 자체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해의 편의에 의해서도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두드러지게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나 시스템의 연결을 묘사한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장치의 구성 요소가 다를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자체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창작적 개성의 유무를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 구성의 차이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표현에 있어서 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결여된 저작물은 창작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8].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저작권 성립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행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에만 인정되며,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의 개념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적 표현 활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9]. 그러나 AI 생성물에 일부라도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포함된다면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있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최종 산출물의 선택이나 편집에 영향을 미쳤다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AI가 단순한 도구로 사용된 경우와, AI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저작권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10]. 또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11].

2.4.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

인공지능은 외부의 환경을 인지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계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술과 컴퓨팅 능력을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간의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던 예술, 음악, 소설 등 창의적인 분야까지 도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가 제작한 창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ABUS 사례를 들 수 있다. DABUS는 Stephen Thaler가 설계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자율적 부트스트래핑 장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AI는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발명으로는 위험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경고 등과 열전도성 및 그립 기능이 향상된 음식 용기를 개발했다. DABUS의 발명자 자격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202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허청이 DABUS의 발명을 공식적으로 특허로 등록하면서,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AI 발명자 자격에 대한 중요한 법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12]. 이후 2021년 7월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인 DABUS가 제출한 특허 출원에 대해 발명자 자격을 인정하며,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된 최초의 심사관제 국가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자연인만 발명자 가능’이라는 원칙에 도전한 판례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현재 기존 법률상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한 확실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은 4건이며, 이 중 20대 국회에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은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총 11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2024년 9월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출범하였고 국회도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AI 산업의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AI 관련 규제 법안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3. AI 저작권법의 해외 입법 동향

Table 1. Legislative Developments on AI Copyright Law by Country

Country	Issues Related to AI-Generated Work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Legislative Trends
미국	• AI 저작물은 인간 창작물에만 저작권을 부여하는 입장 고수	•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06조)	AI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인정 불가
	• DABUS 사건(Thaler v. Hirshfeld NO. 21-2347) • AI 독자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거부	• Thaler v. Hirshfeld 판결	해당 판결 이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체계 필요성 제기
	• 2023년 AI 산업 발전과 규제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 2023년 10월 30일 대통령 행정 명령	AI 개발과 사용을 위한 안전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원칙 천명
일본	• 국내법상 AI 생성물은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저작물 정의)	현행법상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향후 입법 보완 필요성 검토 중
	• '지식재산 추진계획 2023' 발표로 AI 저작물 침해와 관련한 입법 논의 시작	• 특허법 제29조 제1항(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을 창출한 자)	
중국	• 주요 사건: 베이징필름과 바이두 소송 (2018京0491民初3239호) ※ 법원 판단: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자연인에게만 인정 기조 유지	• 중국 저작권법 제3조: 창작이라 함은 인간의 문화예술적 저작물을 직접 만드는 지적활동임. 타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보조적인 작업수행은 창작으로 보지 않음)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불가 판결
			AI 생성물 보호에 대한 법적 구분 필요성 및 AI 창작물에 관한 입법 필요성 제기
유럽 연합 EU	• AI 권리에 대한 입법논의 선제적 진행(2012년)	• FP7 (Seven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I에 대한 시민권 부여 가능성 논의
	•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와 로봇 시민권 권고안 발표 (2017년)	• RoboLaw Project.	AI의 권리와 책임 문제 세부 입법 검토
	• AI 관련 기술의 위험도에 따른 준수사항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권리 보장과 기술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적 틀 생성 필요 의견

자료: (표)본문 주요 내용 연구자 재정리

3.1. 미국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 대한 명확한 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 제102(a)에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규정하면서 저작물의 의미 범위에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만 해당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법 학자인 마샬 A. 레아퍼는 이에 대해 저작물의 용어에 대해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는 저작자의 창작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창조적 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13]. 미국 저작권청 실무서(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는 306조에 인간의 저작권 요건에 대해 저작물이 인간의 창작물이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기계나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은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저작물은 창의적 표현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인간의 의도와 창의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 규정은 저작권이 인간의 독창적 표현에만 부여됨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도에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지향하는 국제단체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는 영국 출신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를 상대로, 원숭이의 촬영 행위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Naruto v. Slater, No. 16-15469). 이 사건은 인간 이외의 존재, 즉 동물이 창작 주체로서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소송에서 PETA는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인도네시아의 검은빛 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Naruto)'에게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수익을 원숭이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약 3년에 걸쳐 아홉 차례의 심리를 거친 끝에,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은 오직 법적 권리 주체인 '자연인(human beings)'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며, 동물은 저작권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2022년 2월 미국 저작권청 심의위원회의 리뷰 보드(Review Board)는 Stephen Thaler가 개발한 AI인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가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건(Thaler v. Hirshfeld, No. 21-2347)에 대해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이 창작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근거로,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인간에 의한 창작(human authorshi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이유로 들며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혔고 2023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기술 오용에 따른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AI 관련 입법 태도의 다양한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2023년 10월 30일 AI 산업의 발전 전략과 규제 방안을 모두 포함한 대통령 행정 명령이 발동되었는데 여기에는 AI 시스템이 국가 안보, 경제, 건강 등과 관련이 있을 때 AI 개발 회사가 정부에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이 조치는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나 구글(Google) 등 미국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AI 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령이나 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인공지능 관련하여 각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규제 방안으로 평가되며 해당 규제 등을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3.2. 일본

일본 정부 산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3」을 발표하며,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AI) 또는 관련 데이터가 활용되어 문장이나 영상 등을 생성하는 이른바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AI에 의한 저작물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4].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 체계는 저작권 보호의 주체로서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저작물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인간의 창작 의도가 개입되지 않거나 그 개입 수준이 미미한 인공지능(AI)의 생성물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란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므로 인간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이 발명 내지는 디자인권 같은 저작권 이외의 저작물도 생성될 수 있는데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발명을 한 자"에 한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기에 특허 또한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AI 저작물 침해와 관련한 저작자 정의 등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콘텐츠 투자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중국

중국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AI 관련 기술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15]. 또한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술 시대를 대비한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자 지위에 관해서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의 정의를 문화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발휘하며 일정한 형식으로 묘사된 지식 성과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지식의 산출 주체가 자연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동법 제11조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저작자는 자연인으로 명시하여 인공지능은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저작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주요 판결 건으로는, 2020년 5월 베이징필름로펌이 바이두(Baidu)를 고소한 사건으로 베이징필름로펌은 바이두가 자사의 '서명권', '작품완성권',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8년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16].

법원은 판결에서 "바이두가 필름의 허가 없이 바이두 운영 플랫폼에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보고서의 서명과 머리말 등을 삭제하고 본문만 베껴 게재한 것은 필름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I 글은 작품이 아니며,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현행 저작권법의 체계 아래에서 창작자의 범위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실제로 바이두(Baidu)의 사안에서 법원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무단 이용이 일정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권, 즉 성명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대중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태그를 부여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창작물임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3.4.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AI의 권리에 대해 가장 앞선 논의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로보로(RoboLaw)'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2014년 5월에는 로봇 및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지침(Robot Regulation Guidelines)을 공표하였다. 이 지침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수립하고, 인간-기계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대에 대비한 규범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며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수단을 통해 AI와 관련된 발명 및 콘텐츠를 지식재산의 범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제조업, 농업, 헬스케어, 교통, 사회보장 등 다른 산업과의 통합을 통해 세계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세계 최대 로봇 연구 프로그램인 SPARC를 운영해 왔으며 유럽연합(EU)이 로봇의 산업 발전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로봇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7th Framework Programme)의 일환으로 로봇 관련 법과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로보로 프로젝트(RoboLaw Project)'를 추진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로봇 기술에 대한 법·윤리적 규제의 방향성을 담은 「로봇 규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을 제시하였다[17]. 이후 2017년에는 유럽의회가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내용의 '전자 인격(electronic personhood)' 개념을 포함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자율적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귀속 문제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18].

2023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EU 27개 회원국은 인공지능 관련 최초의 포괄적 규제 법률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다.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위험 기반(risk-based)으로 분류하여 각 수준에 따라 상이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성향, 종교적 신념, 인종 등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을 자동 분류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biometric categorisation system)의 구축에 있어, 생체정보에 대한 비식별적 수집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AI 기술의 발전을 장려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윤리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감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EU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특히, 생체 인식 자료 방어, 명료성 확보, 그리고 위험성에 따른 규제 적용을 통해 권리 보장과 기술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 AI 규제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19].

4. AI 생성물의 저작권자

4.1. 약한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이 도구로 사용되어 인간이 창작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간의 실질적인 개입이 높았다면,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통한 저작물 창작에서 인간의 정의적 참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 연구개발자와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자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이 창작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다. 둘째는, 인간이 직접적인 창작행위 없이 인공지능의 작동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바탕으로 저작권 주체와 창작활동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저작권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였더라도 인간의 참여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는 저작물의 창작 여부와 저작권 인정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4.1.1. 연구개발자

연구개발자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자로서 확정적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 AI 생성물 자체가

개발자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창작적인 표출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라고 보아야 한다[21]. 또한 이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단순 의뢰 정도의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자와 비교하여 연구개발자는 AI 생성물에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22]. 이와는 반대로 반면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AI 생성물 제작을 위한 경제적 목적의 자율적인 도구로 해석할 수 있고, 연구개발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생성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판매를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연구개발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23].

4.1.2.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자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창작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창작성을 표현하는 단순 도구로 이용된다면, 사용자는 이전의 여지 없이 독자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24]. 이는 인공지능 사용자가 특정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특정한 선택과 지시를 하며 인공지능 생성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는 사용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창작물의 단순 제작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항에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조적 표현이라는 현행 저작권법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의존적 행위로 간주 될 여지가 높기에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

4.1.3. 인공지능시스템 자체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시스템 자체는 저작자로서 권리부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격적 실체가 불명확하고 창작의 동기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 산정과 귀속주체가 될 수 없는 인공지능시스템 자체는 저작권자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여진다[25]. 다만 인공지능시스템 자체에 대한 AI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창작 범주가가 뚜렷하고 예측 가능한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AI 생성물의 작품 완결에 인공지능시스템 자체가 독자적인 재량권을 보유했다고 판단하고 저작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와 산업 전반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만약 인공지능시스템 자체가 저작자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향후에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지면 된다.

4.1.4. 공동저작권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1호에서는 '공동저작물'을 두 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된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항을 종합하면, 공동저작자란 공동 창작의 의사를 바탕으로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분리 불가능한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에 성립되며, 이는 법적으로 단일한 공동저작물로 간주된다[27].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48조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저작재산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를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공동저작자들 간의 권리 행사 방식에 대한 내부적 제약의 의미할 뿐, 특정 공동저작자가 타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타인의 저작재산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동저작물의 내부적 권리 행사의 제한에 해당하며, 민사상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상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28].

최근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에서 공동 저작권자의 개념과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AI와 인간이 협력해 창출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첫 번째 견해는 AI가 창작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다룬다. 이 관점에 따르면, AI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창작 과정에서 핵심적인 선택과 편집은 인간이 담당한다.

따라서 AI가 개입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AI가 단순한 도구로서 인간 창작자의 창의적 개입에 의해 최종 창작물이 완성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29]. 또 다른 견해는 AI가 창작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공동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 관점은 AI의 자율적 창작 능력과 인간의 기여도를 모두 고려하여 저작권을 공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은 AI를 독립적인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공동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30].

4.1.5. 업무상 저작물

인공지능이 생성한 생성물을 우리 저작권법 제2조 31호의 예외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그 법인 등의 사용자가 원시적으로 취득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직접 창작한 자연인이 아닌 그 자연인을 지휘 감독한 법인 등의 사용자에게도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저작권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을 예외적인 저작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작로서의 자연인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하고 결국 저작권법에 의해 법인에 대한 지휘, 감독 대상으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종속 관계의 사실관계 대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31].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역시 인공지능시스템 자체가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자연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또한 사용종속 관계의 사실관계 대상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인공지능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2].

4.1.6. 공공영역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자 검토 결과 인공지능시스템 설계자 및 사용자 모두 저작권법에 근거한 창작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공공의 소유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33]. 또한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인공지능 자체에게 저작권보호를 부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34].

4.2. 강한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을 구별할 때 사람들은 흔히 ‘약한weak’ 인공지능과 ‘강한strong’ 인공지능의 구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구별은 인공지능의 형태를 서로 구별할 때만 흔히 사용되는데 정의적 개념을 보면, 약한 인공지능은 AI 생성물을 생성하고 저작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간(자연인)의 역할과 개입을 필요로 하며 반대로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이나 조건값 입력과 상관없이 인공지능 자체로 자의식을 가지며, 데이터를 생성하고 프로그램 전반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하나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독립적 저작권 생성이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35].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은 사람과 비슷한 인지 능력을 지닌 자율적 시스템으로, 여러 영역에서 인간 처럼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작업 처리 능력을 넘

어, 인간의 복잡한 사고 구조를 모방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한다. 강한 AI는 특정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처럼 폭넓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강한 인공지능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율 학습 능력, 감각 및 인식 능력, 그리고 추론 및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자율 학습은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상황에 맞춰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을 지닌 인식 능력이 필수적이다. 복잡한 문제 해결 및 추론 능력은 AI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36].

강한 AI가 구현되면 의료, 제조업,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을 주도할 수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복잡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서는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자율성을 지닌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윤리적, 법적 논의가 필요하며, AI가 자율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

4.2.1. 연구개발자 및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 범위에 대해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 및 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자의 창의적인 창작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인공지능 제작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중적 보상이 지급되게 되므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2. 인공지능시스템 자체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인공지능 및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저작권은 인간이 가진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자연인만이 보유한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37]. 따라서 작품에 대한 창작성 또한 자연인만이 보유한 인격권과 인과관계가 있고 인공지능시스템 자체가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38].

4.3. 입법적 해결 방안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이 가진 사상이나 감정을 통한 창작행위의 경우 곧바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자연인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생성물의 경우 인공지능 자체가 인격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체이기에 저작자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저작물로서의 권리 자체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제도의 원칙하에서 이견에 따른 간극이 크지는 않다.

결국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고 창작 자체에 기여한 사람은 인공지능연구 개발자 및 사용자로서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함의에 부합하는 창작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은 공공 저작물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39]. 다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를 인공지능 그 자체로 인정하는 해외 판례 등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국가적인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근거로 저작자의 범위 안에 인공지능을 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40], [41].

최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과 관련된 입법 논의는 기존 법률의 한계를 인식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춰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I가 창작한 콘텐츠는 기존 저작권법에서 창작자가 '인간'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창작의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 된 경우에도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인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생성물의 법적 보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생성물이 실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42].

또한 AI가 창작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경우, 인간 창작자와 AI 간의 공동 저작권을 인정하는 입법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예를 들어,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안이다. 이는 AI가 창작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 창작의 실질적 기여자로서 AI를 인식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AI 자체를 국내법상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는 공동 저작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검토 또한 필요하다[43].

결국,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AI가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는 AI 생성물의 법적 보호를 통해 창작의 가치를 보존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5. 결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AI)은 생성형 GPT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44]. 특히 약한 인공지능과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자의식을 보유하며 독자적인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데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존 법적 제도하에서 법률해석을 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일 사실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자연인이 저작물의 주체가 되는 약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하기에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약한 인공지능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프로그래밍된 규칙이나 미리 정의된 패턴을 따르므로 이 경우, 개발자나 소유자는 해당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자의식을 소유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생성물에 대한 저작자 인정에 있어 다양한 법적 다툼 및 학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AI와 저작권의 법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AI 저작권의 해외 입법 동향을 통하여 AI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과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대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현행 법과 제도의 원칙하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광범위한 권리보호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저작자의 창의적인 창작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또한 인공지능 제작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중적 보상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문제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 과정 등을 통해 상당히 신중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의 경우 인공지능 자체가 인격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체이기에 저작자로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저작물로서의 권리 자체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만든 저작물이기에 인간의 창작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인간이 만들고 소유하고 있는 예술적 창작 자체의 가치가 폄하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저작물 자체가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과의 경제적 등가 비교 대상으로서 판단하기 부적절하고 또한 단순 소비 형태의 문화적 자산으로 인공지능 저작물과 동일하게 가치게 매겨진다면 인류학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는 법적, 기술적 측면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고 문화예술적, 정책적, 법적 안정성까지 다양하게 고려하여 신중한 입법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1] Im T. 2022. A study on how to apply AI education to K-12.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KOFAC), Korea.
- [2] Martinez R.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Distinguishing between types & definitions. Nevada Law Journal 19:1015-1041.
- [3] Kim S, Lee C. 2018. Leg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generated works: Focusing on patent and copyright. Journal of Legal Studies 18(3):471-496.
- [4] Chun S. 2019. The author in UK copyright law. Hanyang Law Review 30(1):221-242.
- [5] Kang M. 2013. A study on moral rights of authors. Dong-A Law Review (58):727-750.
- [6] Choi J. 2011.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game developers' creative rights: Focusing on the "work made for hire" doctrine under copyright law.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11(4):81-93.
- [7] Oh S. 2016. Copyright Law (in Korean). Pakyoungsa, Korea.
- [8] Supreme Court of Korea. 2005. Decision 2002Do965 (January 2025) [Criminal case].
- [9] Lee E. 2020.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17(3):32-48.
- [10] Kang J. 2021. The boundary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Law and Society 29(1):99-120.
- [11] Choi Y. 2021.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vising copyright law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19(2):78-93.
- [12] Thaler S. 2021. DABUS: The creativity machine and the future of patents.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29(3):215-238
- [13] Leaffer MA. 2010. Understanding Copyright Law, 6th edition. LexisNexis, USA.
- [14] China Industrial Information Securit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19. Rengong zhineng jishu fazhan baipishu [White Paper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hina Industrial Information Securit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China.
- [15] China Industrial Information Securit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19. Zhongguo rengong zhineng fazhan baogao 2019 [China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Report 2019]. China Industrial Information Securit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China.
- [16] Beijing Chaoyang District People's Court. 2018. (2018) Jing 0491 Minchu No. 3239 Civil Judgment [Beijing Chaoyang District People's Court, Civil Judgment No. 3239].
- [17] Lee W. 2016. Regulatory Trends No. 23 (15 June 2016): Potential Conflicts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Korea.
- [18] Kim J, Joo S, Jang S. 2017. Granting electronic personhood to 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Focusing on the EU resolution. Beopjo (The Justice) 66(4):124-150.
- [19] European Commission. 20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COM(2021) 206 final). European Commission, Belgium.
- [20] Jung S. 2018. Copyright law challenge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Quarterly Copyright Review 122:52-65.
- [21] Dorotheou E. 2015. Reap the benefits and avoid the legal uncertainty: Who owns the cre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s?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Review 21(4):21-27.

- [22] Kim Y. 2016.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protection for AI-generated works. *Journal of Legal Studies* 27(3):288-310.
- [23] Kim H. 2018. A study on differentiated legal treatment of AI-generated works. *Journal of Legal Studies* 29(2):45-72.
- [24] Kim H. 2017. A study on the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uthorship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lobal Legislative Strategy Research No. 17-18-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 [25] Choi J. 2017. The subject of copyright in AI-generated works. *Journal of Culture, Media & Entertainment Law* 11(1):130-153.
- [26] Wu AJ. 1997. From video gam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signing copyright ownership to works generated by increasingly sophisticated computer programs. *AIPLA Quarterly Journal* 25:131-176.
- [27] Supreme Court of Korea. 2016. Case No. 2014Do16517: Violation of Copyright Act (29 July 2016). *Supreme Court Gazette* 2016Ha, 1307.
- [28] Supreme Court of Korea. 2014. Case No. 2012Do16066: Violation of Copyright Act (11 December 2014). *Supreme Court Gazette* 2015Sang, 154.
- [29] Kim C. 2020. The issue of copyright applicability to AI-generated works. *Digital Copyright Review* 48(2):25-48.
- [30] Seo J. 2021. Discussion on copyright for joint works by AI and humans. *Intellectual Property and Law* 44(3):77-102.
- [31] Chung S. 2007. *Annotated Commentary on Copyright Law*. Pakyoungsa, Korea. pp. 291-292.
- [32] Kim Y. 2016. A preliminary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Information Law* 20(1):145-171.
- [33] Lee S. 2016. Who holds the copyright to AI-generated works?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22(3):255-277.
- [34] Kim Y. 2016. Legal issues conc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RI Issue Report, 2016-0005.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Korea. p. 16.
- [35] Kim J. 2017.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between 'weak'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Philosophical Studies* 117:111-134.
- [36] Bory P, Natale S, Katzenbach C. 2024. Strong and weak AI narratives: an analytical framework. *AI & Society* 40:2107-2117.
- [37] Son S. 2019. Legal challenges in the use of AI and big data. *Sports, Entertainment and Law Journal* 22(3):5-28.
- [38] Jeong W. 2019. Legal issues and policy challeng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Journal of Korean Information Law* 31(1):1-27.
- [39] Han J.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w: A review of rights attribution in AI-generated works. *Ajou Law Review* 15(4):335-370.
- [40] Indian Copyright Office. 2020. RAGHAV artificial intelligence painting App registered with co-authorship status.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s://copyright.gov.in> Accessed on 18 June 2025.
- [41]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1. Co-authorship registration approved for AI-generated artwork.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https://ised-isde.canada.ca> Accessed on 18 June 2025.
- [42] Jeong Y. 2020. Copyright protection strategies for AI-generated works. *The Journal of Law & IP* 10(2):157-195.
- [43] Cho YH. 2020. Copyright issues in AI-generated works: Focusing on originality and authorship. *Media and Law* 19(3):71-113.
- [44] Yoon YS. 2024. Technical considerations on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of generative AI. *Journal of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20(3):1-11.

원저

AI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에 대한 법적 검토

김지웅

전남대학교 지식재산융합전공 연구교수

교신저자: 김지웅 (kim77@jnu.ac.kr)

요약

생성형 AI 챗GPT 열풍과 더불어 경제 사회 전반에 AI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생성물이 인간이 창조한 저작물로 인정될지의 여부와 창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프로그래밍된 규칙이나 미리 정의된 패턴을 따르므로 이 경우, 개발자나 소유자는 해당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자의식을 소유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생성물에 대한 저작자 인정에 있어 다양한 법적 다툼 및 학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I와 저작권의 법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AI 저작권의 해외 입법 동향을 통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에 대한 법제적인 대안들을 논의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인공지능 생성물, 저작자, 저작권, 약한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AUTHORS INFORMATION

김지웅 (Ji Ung Kim)

2022년 09월 – 현재 전남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전담교수

2019년 03월 – 2022년 01월 디지털경영혁신연구소장

2011년 09월 – 2018년 06월 HD현대그룹사 경영지원팀 직책과장

관심분야: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지식재산 경영전략, AI 예측모형과 특허데이터 분석